#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 : 임이자 · 김태호 · 김형동

김위상 • 곽규택 • 김성원

김종양 · 김승수 · 최수진

이종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 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 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 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 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많은 기업들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 법률 제 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또는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③ 제2항 각호에 따라 주식을 소유한 공동출자법인은 그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중 "제2조제8호의 기준"을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선 설>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제2조제8호에 따른다) 또는 소자회사(같은 법제2조제9호에 따른다) 또는 소자회사(같은 법제2조제9호에 따른다)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제18조제3항제2호 및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또는 손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또는 손자회사는 다른 소자회사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수 있	현 행	개 정 안
다.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또는 손자회사(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3항제2호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또는 손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또는 손자회사는 다른 소자회사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및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에 대한 특례) (생 략)

산품의 우선구매 등) (생 략)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 의 양수
-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 제의 수령
- ③ 제2항 각호에 따라 주식을 소유한 공동출자법인은 그 주 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처분하여야 한다.
-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에 대한 특례) (현행 제22조의2 와 같음)
-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산품의 우선구매 등) (현행 제2 2조의3과 같음)
-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 야 하다.
- 1. (생략)
- 2.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생략)
- ③ ~ ⑥ (생 략)
-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① ~ ③ (생 략)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④ ----- 제22조의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
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
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
의 기준
②
1 (청해과 간으)

- 1. (연앵과 샅음)
- 2.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 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 한다)----
- 3.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 ① ~ ③ (현행과 같음)

4제1	항에 I	따라	인	증을	받은	· 장
애인	표준	사업	장	또는	. Г;	장애
인복	지법」	ス	158	조제	1항제	3호
의 경	상애인	직역	겁재	활시	설에	도
급을	주어	ユ	생신	문품을	납	품받
는 시	나업주	에 1	대하	여	부담	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22조의4</u>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u>제22조의4</u>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 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생략)

② ~ ⑤ (생 략)

<u>5</u>
<u>.</u>
⑤ ~ ①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1. 제22조의5
1. <u>11222 10</u>
2. <u>제22조의5</u>
2. <u>1122110</u>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